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주 의 요 구

제 목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부적정

기 관 명 울산광역시 ○구, ○구, ○구, ○구, ○○군

내 용

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르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상황,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 등을 조사하여 인명·가축 또는 농작물 등 피해대상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시기, 포획도구, 포획지역¹⁾ 및 포획수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포획으로 인하여 생태계가 교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.

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0조 및 「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」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일련번호가 부여된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사전에 준비하여 허가 시 포획허가 동물의 수량만큼 발급하여야 하며, 사용하고 남은 확인표지는 반드시 반납 받은 후 폐기하고 이를 관리대장에 기록·유지하도록 되어 있다.

1) 포획지역은 리·동단위로 하되 피해지역이 행정구역 경계에 걸쳐거나, 자력포획의 경우는 포획대상 동물의 서식범위(멧돼지 1~4km², 고라니 최대 1.5km² 등) 및 포획방법에 따라 허가 범위를 피해지역 인근으로 축소 또는 확대(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, 2013.7.25., 2016.6.20)

또한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를 받고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.

1. 울산광역시 ○구(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부적정)

○구 ○○○○과는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·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,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[표1]과 같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2건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, 해당 지역 및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상황, 유해야생동물의 종류·수 등의 조사 및 피해정도·서식실태·포획목적 등의 고려 없이 무제한으로 포획을 가능하게 하였고, 멧돼지 포획 12건에 대해서는 포획지역을 남구 전체를 대상으로 허가하였으며, 포획허가 유해야생동물 수량에 비례하는 확인표지를 발급(잔여 확인표지는 회수)하지 않아 유해야생동물이 적정하게 포획될 수 있도록 허가 및 관리를 하지 않았다.

[표1]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부적정 현황

연번	허가번호	허가일자	허가지역	야생동물	수량	비고
1	제2015-01호	2015.07.22	○구 관내 (피해지역 등으로 한정)	멧돼지, 고라니, 조류 등	무제한	
2	제2015-02호	2015.07.22	○구 관내 (피해지역 등으로 한정)	멧돼지, 고라니, 조류 등	무제한	
3	제2015-03호	2015.07.22	○구 관내 (피해지역 등으로 한정)	멧돼지, 고라니, 조류 등	무제한	
4	제2015-04호	2015.07.22	○구 관내 (피해지역 등으로 한정)	멧돼지, 고라니, 조류 등	무제한	
5	제2015-05호	2015.12.09	○구 관내	멧돼지	무제한	
6	제2015-06호	2015.12.09	○구 관내	멧돼지	무제한	

연번	허가번호	허가일자	허가지역	야생동물	수량	비고
7	제2015-00호	2015.00.09	○구 관내	멧돼지	무제한	
8	제2015-00호	2015.00.09	○구 관내	멧돼지	무제한	
9	제2016-00호	2016.00.22	○구 관내 (피해지역 등으로 한정)	멧돼지, 고라니, 조류 등	무제한	
10	제2016-00호	2016.00.22	○구 관내 (피해지역 등으로 한정)	멧돼지, 고라니, 조류 등	무제한	
11	제2016-00호	2016.00.22	○구 관내 (피해지역 등으로 한정)	멧돼지, 고라니, 조류 등	무제한	
12	제2016-00호	2016.00.22	○구 관내 (피해지역 등으로 한정)	멧돼지, 고라니, 조류 등	무제한	
13	제2016-00호	2016.00.19	○구 관내	멧돼지	무제한	
14	제2016-00호	2016.00.19	○구 관내	멧돼지	무제한	
15	제2016-00호	2016.00.23	○구 관내	멧돼지	무제한	
16	제2016-00호	2016.00.23	○구 관내	멧돼지	무제한	
17	2017-00호	2017.00.07	○구 관내 (피해지역 등으로 한정)	멧돼지, 고라니, 조류 등	무제한	
18	2017-00호	2017.00.07	○구 관내 (피해지역 등으로 한정)	멧돼지, 고라니, 조류 등	무제한	
19	2017-00호	2017.00.22	○구 관내	멧돼지	무제한	
20	2017-00호	2017.00.22	○구 관내	멧돼지	무제한	
21	2017-00호	2017.00.22	○구 관내	멧돼지	무제한	
22	2017-00호	2017.00.22	○구 관내	멧돼지	무제한	

※ 울산광역시 남구 제출자료 재구성

2. 울산광역시 ○구(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부적정)

○구 ○○○○과는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·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,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[표2]와 같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6건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, 해당 지역 및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상황, 유해야생동물의 종류·수 등의 조사 및 피해정도·서식실태·포획목적 등의 고려 없이 포획수량을 결정하였고, 2017년 6건에 대해서는 포

획지역을 동구 전체를 대상으로 허가하였으며, 포획허가 유해야생동물 수량에 비례하는 확인표지를 발급(잔여 확인표지는 회수)하지 않아 유해야생동물이 적정하게 포획될 수 있도록 허가 및 관리를 하지 않았다.

[표2]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부적정 현황

연번	허가번호	허가일자	허가지역	야생동물	수량	비고
1	제2015-0호	2015.00.29	○○산 등 일원	멧돼지, 고라니	각 10마리	
2	제2015-0호	2015.00.29	○○산 등 일원	멧돼지, 고라니	각 10마리	
3	제2015-0호	2015.00.29	○○산 등 일원	멧돼지, 고라니	각 10마리	
4	제2015-0호	2015.00.29	○○산 등 일원	멧돼지, 고라니	각 10마리	
5	제2016-0호	2016.00.01	○○산 등 일원	멧돼지, 고라니	각 40마리	
6	제2016-0호	2016.00.01	○○산 등 일원	멧돼지, 고라니	각 40마리	
7	제2016-0호	2016.00.01	○○산 등 일원	멧돼지, 고라니	각 40마리	
8	제2016-0호	2016.00.01	○○산 등 일원	멧돼지, 고라니	각 40마리	
9	제2016-0호	2016.00.01	○○산 등 일원	멧돼지, 고라니	각 40마리	
10	제2016-00호	2016.00.01	○○산 등 일원	멧돼지, 고라니	각 40마리	
11	제2017-0호	2017.00.01	○구 전지역(도심지역 제외)	멧돼지, 고라니	각 60마리	
12	제2017-0호	2017.00.01	○구 전지역(도심지역 제외)	멧돼지, 고라니	각 60마리	
13	제2017-0호	2017.00.01	○구 전지역(도심지역 제외)	멧돼지, 고라니	각 60마리	
14	제2017-0호	2017.00.01	○구 전지역(도심지역 제외)	멧돼지, 고라니	각 60마리	
15	제2017-0호	2017.00.01	○구 전지역(도심지역 제외)	멧돼지, 고라니	각 60마리	
16	제2017-00호	2017.00.01	○구 전지역(도심지역 제외)	멧돼지, 고라니	각 60마리	

※ 울산광역시 ○구 제출자료 재구성

그리고 아래 [표3]과 같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8건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하면서 2015년 1건에 대해서는 수렵보험기간을 111일 초과하여 포획허가 하였다.

[표3]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부적정 현황

연번	허가번호	허가일자	포획허가기간	보험가입기간	초과(일)	비고
1	제2015-0호	2015.00.00	2015.01.19. ~ 2015.06.19	2014.11.20. ~ 2015.02.28	111	

※ 울산광역시 ○구 제출자료 재구성

3. 울산광역시 ○구(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부적정)

○구 ○○○○과는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·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,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[표4]와 같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9건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, 해당 지역 및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상황, 유해야생동물의 종류·수 등의 조사 및 피해정도·서식실태·포획목적 등의 고려 없이 무제한으로 포획을 가능하게 하였고,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6건에 대해서는 포획지역을 북구 전체를 대상으로 허가하였으며, 포획허가 유해야생동물 수량에 비례하는 확인표지를 발급(잔여 확인표지는 회수)하지 않아 유해야생동물이 적정하게 포획될 수 있도록 허가 및 관리를 하지 않았다.

[표4]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부적정 현황

연번	허가번호	허가일자	허가지역	야생동물	수량	비고
1	제2015-00-01호	2015.00.00	○○동, ○○동, ○○1동	멧돼지,까치 외	무제한	
2	제2015-00-02호	2015.00.07	○○동, ○○동, ○○1동	멧돼지,까치 외	무제한	
3	제2015-00-03호	2015.00.07	○○2동, ○○3동	멧돼지,까치 외	무제한	
4	제2015-00-04호	2015.00.07	○○2동, ○○3동	멧돼지,까치 외	무제한	
5	제2015-00-05호	2015.00.07	○○2동, ○○3동	멧돼지,까치 외	무제한	
6	제2015-00-06호	2015.00.07	○○2동, ○○3동	멧돼지,까치 외	무제한	
7	제2015-00-07호	2015.00.07	○○동, ○○동, ○○동	멧돼지,까치 외	무제한	
8	제2015-00-08호	2015.00.07	○○동, ○○동, ○○동	멧돼지,까치 외	무제한	
9	제2015-00-09호	2015.00.07	○○동, ○○동, ○○동	멧돼지,까치 외	무제한	
10	제2015-00-10호	2015.00.07	○○동, ○○동, ○○동	멧돼지,까치 외	무제한	
11	제2015-00호	2015.00.23	○구 ○○공향	까치 외	무제한	
12	제2016-00-01호	2016.00.06	○구 전지역	멧돼지,까치 외	무제한	

연번	허가번호	허가일자	허가지역	야생동물	수량	비고
13	제2016-00-02호	2016.00.06	○구 전지역	멧돼지,까치 외	무제한	
14	제2016-00-03호	2016.00.06	○구 전지역	멧돼지,까치 외	무제한	
15	제2016-00-04호	2016.00.06	○구 전지역	멧돼지,까치 외	무제한	
16	제2016-00-05호	2016.00.06	○구 전지역	멧돼지,까치 외	무제한	
17	제2016-00-06호	2016.00.06	○구 전지역	멧돼지,까치 외	무제한	
18	제2016-00-07호	2016.00.06	○구 전지역	멧돼지,까치 외	무제한	
19	제2016-00-08호	2016.00.06	○구 전지역	멧돼지,까치 외	무제한	
20	제2016-00-09호	2016.00.06	○구 전지역	멧돼지,까치 외	무제한	
21	제2016-00-10호	2016.00.06	○구 전지역	멧돼지,까치 외	무제한	
22	제2016-00-11호	2016.00.06	○구 전지역	멧돼지,까치 외	무제한	
23	제2016-00-12호	2016.00.06	○구 전지역	멧돼지,까치 외	무제한	
24	제2016-00호	2016.00.16	○구 ○○공항	까치 외	무제한	
25	제2017-00-01호	2017.00.27	○구 전지역	멧돼지,까치 외	무제한	
26	제2017-00-02호	2017.00.27	○구 전지역	멧돼지,까치 외	무제한	
27	제2017-00-03호	2017.00.27	○구 전지역	멧돼지,까치 외	무제한	
28	제2017-00-04호	2017.00.27	○구 전지역	멧돼지,까치 외	무제한	
29	제2017-00-05호	2017.00.27	○구 전지역	멧돼지,까치 외	무제한	
30	제2017-00-06호	2017.00.27	○구 전지역	멧돼지,까치 외	무제한	
31	제2017-00-07호	2017.00.27	○구 전지역	멧돼지,까치 외	무제한	
32	제2017-00-08호	2017.00.27	○구 전지역	멧돼지,까치 외	무제한	
33	제2017-00-09호	2017.00.27	○구 전지역	멧돼지,까치 외	무제한	
34	제2017-00-10호	2017.00.27	○구 전지역	멧돼지,까치 외	무제한	
35	제2017-00-11호	2017.00.27	○구 전지역	멧돼지,까치 외	무제한	
36	제2017-00-12호	2017.00.27	○구 전지역	멧돼지,까치 외	무제한	
37	제2017-00-13호	2017.00.27	○구 전지역	멧돼지,까치 외	무제한	
38	제2017-00-14호	2017.00.27	○구 전지역	멧돼지,까치 외	무제한	
39	제2017-02호	2017.00.29	○구 ○○공항	까치 외	무제한	

※ 울산광역시 ○구 제출자료 재구성

그리고 아래 [표5]와 같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40건의 유해야생동물 포

획허가를 하면서 23건에 대해서는 수렵보험기간을 1~111일 초과하여 포획허가 하였다.

[표5]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부적정 현황

연번	허가번호	허가일자	포획허가기간	보험가입기간	초과(일)	비고
1	제2015-01호	2015.01.14.	2015.01.19 ~ 2015.06.19	2014.11.20 ~ 2015.02.28	111	
2	제2015-02-01호	2015.07.07	2015.07.13 ~ 2015.11.30	2015.07.20 ~ 2015.11.30	7	
3	제2015-02-02호	2015.07.07	2015.07.13 ~ 2015.11.30	2015.07.20 ~ 2016.02.29	7	
4	제2015-02-04호	2015.07.07	2015.07.13 ~ 2015.11.30	2015.07.20 ~ 2016.02.29	7	
5	제2015-02-08호	2015.07.07	2015.07.13 ~ 2015.11.30	2015.07.20 ~ 2016.02.29	7	
6	제2015-02-09호	2015.07.07	2015.07.13 ~ 2015.11.30	2015.07.14 ~ 2016.07.14	1	
7	제2015-02-10호	2015.07.07	2015.07.13 ~ 2015.11.30	2015.07.20 ~ 2016.02.29	7	
8	제2016-01-02호	2016.07.06	2016.07.11 ~ 2016.11.30	2015.07.14 ~ 2016.07.14 2016.07.21 ~ 2017.07.21	6	
9	제2016-01-05호	2016.07.06	2016.07.11 ~ 2016.11.30	2016.07.21 ~ 2016.11.30	10	
10	제2017-01-01호	2017.06.27	2017.07.01 ~ 2017.12.31	2017.07.03 ~ 2017.12.31	2	
11	제2017-01-02호	2017.06.27	2017.07.01 ~ 2017.12.31	2017.07.03 ~ 2017.12.31	2	
12	제2017-01-03호	2017.06.27	2017.07.01 ~ 2017.12.31	2017.07.03 ~ 2017.12.31	2	
13	제2017-01-04호	2017.06.27	2017.07.01 ~ 2017.12.31	2017.07.03 ~ 2017.12.31	2	
14	제2017-01-05호	2017.06.27	2017.07.01 ~ 2017.12.31	2017.07.03 ~ 2017.12.31	2	
15	제2017-01-06호	2017.06.27	2017.07.01 ~ 2017.12.31	2017.07.03 ~ 2017.12.31	2	
16	제2017-01-07호	2017.06.27	2017.07.01 ~ 2017.12.31	2017.07.03 ~ 2017.12.31	2	
17	제2017-01-08호	2017.06.27	2017.07.01 ~ 2017.12.31	2017.07.03 ~ 2017.12.31	2	
18	제2017-01-09호	2017.06.27	2017.07.01 ~ 2017.12.31	2017.07.03 ~ 2017.12.31	2	
19	제2017-01-10호	2017.06.27	2017.07.01 ~ 2017.12.31	2017.07.03 ~ 2017.12.31	2	
20	제2017-01-11호	2017.06.27	2017.07.01 ~ 2017.12.31	2017.07.03 ~ 2017.12.31	2	
21	제2017-01-12호	2017.06.27	2017.07.01 ~ 2017.12.31	2017.07.03 ~ 2017.12.31	2	
22	제2017-01-13호	2017.06.27	2017.07.01 ~ 2017.12.31	2017.07.03 ~ 2017.12.31	2	
23	제2017-01-14호	2017.06.27	2017.07.01 ~ 2017.12.31	2017.07.03 ~ 2017.12.31	2	

※ 울산광역시 ○구 제출자료 재구성

4. 울산광역시 ○구(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부적정)

○구 ○○○○과는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·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,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

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[표6]과 같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0건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, 해당 지역 및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상황, 유해야생동물의 종류·수 등의 조사 및 피해정도·서식실태·포획목적 등의 고려 없이 포획수량을 결정하여 허가하였고, 포획허가 유해야생동물 수량에 비례하는 확인표지를 발급(잔여 확인표지는 회수)하지 않아 유해야생동물이 적정하게 포획될 수 있도록 허가 및 관리를 하지 않았다.

[표6]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부적정 현황

연번	허가번호	허가일자	허가지역	야생동물	수량	비고
1	2015-1	2015.07.27	○○동, ○○동 등	멧돼지 고라니	30 200	
2	2015-2	2015.07.27	○○동, ○○동 등	멧돼지 고라니	30 200	
3	2016-1	2016.06.20	○구(○○동, ○○동 등의 농업지역)	멧돼지 고라니	20 100	
4	2016-2	2016.06.20	○구(○○동, ○○동 등의 농업지역)	멧돼지 고라니	20 100	
5	2017-3	2017.04.19	○구(○○동, ○○동 등의 농업지역)	멧돼지 고라니	20 100	
6	2017-4	2017.04.19	○구(○○동, ○○동 등의 농업지역)	멧돼지 고라니	20 100	
7	2017-5	2017.04.19	○구(○○동, ○○동 등의 농업지역)	멧돼지 고라니	20 100	
8	2017-6	2017.04.19	○구(○○동, ○○동 등의 농업지역)	멧돼지 고라니	20 100	
9	2017-7	2017.04.19	○구(○○동, ○○동 등의 농업지역)	멧돼지 고라니	20 100	
10	2017-8	2017.04.19	○구(○○동, ○○동 등의 농업지역)	멧돼지 고라니	20 100	

※ 울산광역시 ○구 제출자료 재구성

5. 울산광역시 ○○군(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부적정)

○○군 ○○○○과는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·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,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

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[표7]과 같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63건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, 해당 지역 및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상황, 유해야생동물의 종류·수 등의 조사 및 피해정도·서식실태·포획목적 등의 고려 없이 포획수량을 결정하였고, 조류(까치 제외)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포획을 가능하게 허가하였으며, 포획허가 유해야생동물 수량에 비례하는 확인표지를 발급(잔여 확인표지는 회수)하지 않아 유해야생동물이 적정하게 포획될 수 있도록 허가 및 관리를 하지 않았다.

[표7]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부적정 현황(일부 기재)

연번	허가번호	허가일자	허가지역	야생동물	수량	비고
1	2015-168	2015.07.09	○○군 ○○면 ○○리	까마귀	무제한	
2	2015-299	2015.07.29	○○군 ○○면 ○○리	조류	무제한	
3	2015-303	2015.07.29	○○군 ○○읍 ○○리	조류	무제한	
4	2016-21	2016.02.15	○○군 ○○면 ○○리	조류(까마귀)	무제한	
5	2017-108	2017.06.16	○○군 ○○면 ○○리	조류(오리 등)	무제한	
6	2017-123	2017.06.26	○○군 ○○읍 등	멧돼지 고라니 조류	500 1,000 무제한	
7	2017-124	2017.06.26	○○군 ○○읍 등	멧돼지 고라니 조류	500 1,000 무제한	
8	2017-125	2017.06.26	○○군 ○○면 등	멧돼지 고라니 조류	500 1,000 무제한	
9	2017-126	2017.06.26	○○군 ○○읍 등	멧돼지 고라니 조류	500 1,000 무제한	
10	2017-127	2017.06.26	○○군 ○○면 등	멧돼지 고라니 조류	500 1,000 무제한	

※ 울산광역시 ○○군 제출자료 재구성

그리고 아래 [표8]과 같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57건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하면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허가한 7건에 대해서는 수렵보험기

간을 1~13일 초과하여 포획허가 하였다.

[표8]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부적정 현황

연번	허가번호	허가일자	포획허가기간	보험가입기간	초과(일)	비고
1	2015-25	2015.03.17	2015.03.17 ~ 2015.04.30	2015.03.19 ~ 2016.03.18	2	
2	2015-26	2015.03.18	2015.03.18 ~ 2015.04.30	2015.03.19 ~ 2016.03.18	1	
3	2016-38	2016.03.15	2016.03.16. ~ 2016.03.31	2016.03.19. ~ 2017.03.18	3	
4	2016-39	2016.03.15	2016.03.16. ~ 2016.03.31	2016.03.19. ~ 2017.03.18	3	
5	2016-40	2016.03.17	2016.03.17. ~ 2016.03.31	2015.03.19. ~ 2016.03.18	13	
6	2016-42	2016.03.17	2016.03.17. ~ 2016.03.31	2016.03.19. ~ 2017.03.18	2	
7	2016-43	2016.03.17	2016.03.17. ~ 2016.03.31	2016.03.19. ~ 2017.03.18	2	

※ 울산광역시 ○○군 제출자료 재구성

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 ○구청장, ○구청장, ○구청장, ○구청장,
○○군수는

[주의] 유해야생동물의 과도한 포획으로 인해 생태계가 교란되지 않도록 농작물 등의 피해 상황, 종류 및 수 등을 조사하여 인명·가축 또는 농작물 등 피해 대상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시기, 포획도구, 포획지역 및 포획수량을 적정하게 결정하고, 수렵보험 가입여부와 결격사유 확인, 확인표지 발급 및 관리대장 기록·유지, 포획허가기간 확인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